

의안번호	제251호
의결연월일	2024. 3. 13.

-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3. 4. 심완예 의원 외 2인
- 회 부 일 자 : 2024. 3. 5. 행정복지위원회
- 상 정 일 자 : 2024. 3. 13.

제298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(대표발의자 : 심완예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예산군의회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규정하여 재정 건정성에 이바지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비용추계서의 정의(안 제2조)
 - 기존: 예산군수가 제출한 의안
 - 변경: 예산군수가 제출하거나 예산군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한 의안
- 비용추계의 요청 신설(안 제4조의2)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이범진)

- 본 조례안은 비용추계서 제출범위를 예산군수에서 예산군의 회 의원·예산군의회 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
-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요지

- 없 음

5. 토 론 요 지

- 없 음

6. 심 사 결 과

-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